

의안 번호	1604	【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		검토보고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. 2. 7.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2. 7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2.20.(목)

2. 제안이유

- 가.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

3. 주요내용

- 가. “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”
제명 변경
 - 나.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(안 3조)
 - 다. 첫째아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으로 출산양육지원 확대와 출산양육지원금의 계획 수립(안 제4조)
 - 라. 지원신청서 제출 기한 “6개월” 을 “1년” 으로 변경(안 제5조)
 - 마.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변경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는 조례로서,
- 주요개정 내용은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연도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근 거 법 규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출산장려 분위기 조성)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